

전기제품 PL상담센터 발표

지난 10월중 이루어진 PL상담건수는 모두 29건이었으며, PL상담록과 제품별 회의내용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안을 발췌하여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물론 소비자 여러분의 많은 참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2005. 10. 1~10. 30)

일자	상담품목	상담방법	상담 내용	조치 사항
10.1	배선기구	내방	주의 및 경고 label부착시 공간부족으로 붙이기가 힘들 때의 방법	사용설명서에 모두 적어 놓는 것도 바람직함
10.1	배선기구	내방	내구연한과 소멸시효	내구연한이 5년정도라 해도 소멸 시효의 10년이란 기간은 관리해야함.
10.9	배선기구	내방	주로 화재원인이 부품에 있는데, 보상 책임을 부품업체에 전가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사전 계약서 작성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할 것
10.9	전기매트	전화	납품받는 업체에서 PL보험가입 및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품업체에서 책임지라는 계약서 강요	부품업체와도 기본계약을 철저히 하여 문서로 서로의 책임 한계를 분명히 정해 놓아야함.
10.12	전기매트	내방	- PL보험과 관련하여, 후에 구상권 획득권 - 사용상 주의사항 작성의 애로점	- 계약서를 작성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PL보험 가입권유 - 부분적으로 품목별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표시사항 검토 중
10.12	전기매트	전화	제품을 공급 후 사용자가 개조를 하여 PL사고가 발생하면?	PL보상 책임이 없음
10.23	배선기구	내방	출고(외상판매) 후 중간 유통상을 통해서 판매되었고, 그 후 제조업체가 부도가 났음. 사고 발생 시 중간 유통상이 보상책임이 있지 않을까?	보상을 하여야 함.(연대책임)
10.27	전기밥솥	전화	지시/경고 문구 작성의 애로사항 관련 업체가 공동으로 검토필요	부분적으로 품목별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표시사항 검토 중